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5. 7. 29 전면 개정되어 2006.1.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 수수료를 우리구 수수료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가 2005.11.11신설되어 이·미용사의 면허발급에 관련된 수수료는 동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게 되었으므로 우리구 조례의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 제안내용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징수 신설 (안제3조 「별표2」 나목 12)
- 이·미용업 신규면허 수수료 조항 삭제 (안제3조 「별표2」 나목 14, 15)

□ 검토의견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는 것이고, 수수료 1건당 3,000원은 유사 항목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과 동일한 금액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미용 신규면허 수수료 삭제안도 개정된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령의 수수료는 현행 조례상의 신규면허 5,000원, 재교부 2,000원 보다 상향된 신규면허 5,500원, 재교부 3,000원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2. 21

보고자 : 김 찬 재

첨부 : 관련법조문

관 련 법 조 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5호]

제19조의2(수수료)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1.1 대통령령 19111호]

제10조의2 (수수료)법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1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7710호]

제47조(수수료)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2006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예산규모(총괄) ————— 243,541,853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기정예산액	간주처리액	추경예산(안)	비 고
합 계	243,541,853	240,940,093	901,760	1,700,000	
일반회계	201,601,760	199,000,000	901,760	1,700,000	
특별회계	41,940,093	41,940,093	0	-	
의료급여	151,213	151,213	0	-	
주민소득	1,660,462	1,660,462	0	-	
주 차 장	40,128,418	40,128,418	0	-	

○ 예산내역 ————— 총 1,700,000천원

▪ 행정위원회 소관 : 974,000천원

- 혁신 추진부서(유공자) 인센티브 포상금등 「혁신기획담당관」 ... 50,000천원
- 관급공사 부실예방 시스템 구축 「감사담당관」 80,000천원
- 기록물 D/B 구축 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공사 「총무과」 105,000천원
-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교실 설치 「자치행정과」 550,000천원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 「기획예산과」 171,000천원
- 디지털행정(종이 없는 사무실)구축 「기획예산과」 18,000천원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 726,000천원

- 경로당, 어르신 정보문화 센터로 전환 「가정복지과」 26,000천원
- 생활권공원 확충(문래동 공원) 「공원녹지과」 700,000천원